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5. 12. . 개정,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5. 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06”을 “30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4”를 “301”로 하고, 행정사무관 “33”을 “32”로 하고, 행정주사 “32”를 “31”로 하고,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하며, 총계 “145”를 “144”로 하고, 일반직 계 “144”를 “143”으로 하고, 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1”로 한다.
별표 6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u>
<u><신 설></u>	5. <u>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u>
⑤ 창조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u>	<u><삭 제></u>
7. <u>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 20. (생략)	8. ~ 20.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장 <u>중앙공무원교육원</u>	제3장 <u>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u>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중앙공무원교육원</u>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u> -----

같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인재정보기획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②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u>총 계</u>	<u>306</u>	<u>303</u>	△3
·	·	·	
·	·	·	
<u>일반직 계</u>	<u>304</u>	<u>301</u>	△3
·	·	·	
·	·	·	
<u>행정사무관</u>	<u>33</u>	<u>32</u>	△1
·	·	·	
·	·	·	
<u>행정주사</u>	<u>32</u>	<u>31</u>	△1
·	·	·	
·	·	·	
<u>행정서기보</u>	<u>4</u>	<u>5</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0</u>	<u>8</u>	△2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u>총 계</u>	<u>145</u>	<u>144</u>	△1
•	•	•	
•	•	•	
<u>일반직 계</u>	<u>144</u>	<u>143</u>	△1
•	•	•	
•	•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22</u>	<u>21</u>	△1
•	•	•	
•	•	•	